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추가〉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28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추가(안 제19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5. 15.

다. 회 부 일 : 2025. 5.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상세분석 및 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고, 과업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적·제도적·정책적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

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II. 검토의견

1.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추가 (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9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u>설계변경</u>,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안 제19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u>설계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u>,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¹⁾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현행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도 공사기간·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²⁾하고 있음.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강제성이 없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⑥ (생략)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의 품질을 제고하고,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 기간 중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³⁾.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의 품질이 저하되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을 통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제고와 함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은 이미 ‘설계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입법에 해당하고, 계약 일반원칙을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에 개별업종 사례를 추가할 경우 입법 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법은 계약 금액 조정 사유로 ① 물가 변동, ② 설계 변경, ③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 변경’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2020.4.22.(수)

현행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시행령 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 분쟁해소 및 적정대가 지급 등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문 의 처

02)6788-5150